

대법원 2005. 6. 10 선고 2005다14861 판결 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[공2005.7.15.[230],1142]

판 시 사 항

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,
그 화해조서의 효력

판 결 요 지

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,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.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,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

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.

참 조 조 문

민사소송법 제220조,제248조

재 판 경 과

대법원 2005. 6. 10 선고 2005다14861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05. 2. 2 선고 2004나3800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04. 8. 24 선고 2003가단47314 판결

참 조 판 례

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1다1312 판결(1984,520)대법원1997. 9. 5. 선고 96후1743

판결(1988,189)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1다1312 판결(1984,520)대법원1997. 9. 5. 선고
96후1743 판결(1988,189)

전 문

【원고, 피상고인】 이○걸

【피고, 상고인】 이×지

(소송대리인 변호사 나■인)

【원심판결】 서울북부지법 2005. 2. 2. 선고 2004나3800 판결

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.

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직권으로 본다.

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,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(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1다1312 판결, 1997. 9. 5. 선고 96후1743 판결 등 참조). 기록에 의하면, 원 ·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4나63127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의 원심판결선고 이후인 2005. 2. 22. 작성된 화해조서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로써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되,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을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며,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이강국(재판장) 유지담 배기원(주심)